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2. 10.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및 여성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건립중인 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예술회관운영관련 필요시 위탁 운영할 수 있고, 그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제4조)

○ 예술회관의 시설과 설비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사용허가 대상 및 절차, 허가취소 및 사용제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제5조 내지 제8조)

【사용시설】

- 기본시설 : 대강당, 전시실, 소강당, 야외무대 및 그 부속시설
-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시설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사용시간】

1 일	오 전	오 후	야 간
08:00 ~ 22:00	08:00 ~ 12:00	13:00 ~ 17:00	18:00 ~ 22:00

○ 예술회관 사용시간은 08:00 ~ 22:00(전시실은 10:00 ~ 20:00)로 하고, 시설 사용자는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하며, 유료입장의 사용료는 수입액의 10%로 함(제9조 및 제10조)

【사용료 기준】

(1) 여성 및 사회교육 수강료

구 분	내 용	기 준	수 강 료	비 고
자 격 증 반	조리기능사, 제과제빵, 미용사, 기타 자격증반	1인 1월	10,000원	재 료 비 별도부담
취미·교양반	전통놀이, 음악, 미술,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교양분야	1인 1월	5,000원	〃

(2)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공연(영화)	행사	
공연장	1 일	250,000원	300,000원	1. 초과사용료 가산 가. 30분미만 초과사용시 - 당해 사용료의 20% 가산 나.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다.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 다음회 사용료 전액 2.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 가산 3. 예술회관에서의 여성교육과 사회교육, 예술회관에 사무실을 둔 성주문화원의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소강당 사용은 사용료 면제
	오 전	80,000원	100,000원	
	오 후	100,000원	120,000원	
	야 간	120,000원	150,000원	
야 외 공연장 및 소강당	1 일	50,000원		
	오 전	20,000원		
	오 후	20,000원		
	야 간	30,000원		
	예식(결혼식)	20,000원		
전시실	1 일 (10:00~20:00)	30,000원		

(3)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별			단위	사 용 료	비 고
피 아 노			1회	30,000원	1.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3. 기기 사용재료 및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4. 드라이아 이스기 및 스모그기의 인력과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5. 사용료 면제 가. 행사만을 위한 무대 조명 나.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 반사판 사용 다.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라. 소강당에서의 여성교육 및 사회교육과 예술회관에 사무실을 둔 성주문화원의 교육 및 회의를 위한 부대시설 사용
무 대 조 명			1회	50,000원	
음향시설	음향 반사판		1회	30,000원	
	녹 음	릴	1회	20,000원	
		카셋트	1회	10,000원	
		C D	1회	20,000원	
		비디오	1회	20,000원	
	마 이 크 (3개 초과시)		1회 /대당	5,000원	
무대시설	오케스트라비트		1회	20,000원	
	이 동 무대		1회	20,000원	
영사시설	영 사 기		1회	20,000원	
	LCD 프로젝트		1회	20,000원	
냉 난 방 시 설	대 강 당		1회	50,000원	
	소 강 당		1회	20,000원	
	전 시 실		1일	20,000원	
특수장비 (무대효과)	드라이아이스기		1회	10,000원	
	스 모 그 기		1회	10,000원	
기타시설	덧 마 루		1회	10,000원	
	고 무 매 트 (테이프 포함)		1회	10,000원	
	보 면 대 (30개이상사용시)		1회	10,000원	

○ 공용 또는 공익에 의하거나 군의 시책상 필요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제11조)

○ 허가취소로 인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음(제12조)

○ 시설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할 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용자로서의 관리의무와 훼손 등으로 인한 변상책임을 짐(제13조 및 제14조)

○ 필요시 사용자의 관람료 징수와 그 세부적인 사항, 기타 행사안전 및 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내지 제18조)

○ 여성 및 사회교육 등을 위하여 외래강사 초청 및 수당과 여비지급사항을 규정함(제19조)

○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제20조)

3. 조례안 내용 : 붙 임

4. 참고자료

○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 2002. 9. 3 ~ 2002. 9. 22(20일간)

· 예고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 관련자료

· 타 시·군·구 문화예술회관관련 조례 중 주요내용 대비표(별첨)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전승을 도모하고,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제공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성주군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예술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문화예술상품의 유치와 교류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세미나·교육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예술회관의 대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용어의 정의) 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술회관"이라 함은 대강당, 야외무대, 문화여성복지센터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예술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기타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①군수는 제5조에서 정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 예술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전시실, 소강당, 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

2. 부대설비 : 피아노(공연용),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시설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제6조(사용허가) ①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예술회관사용허가의 범위는 제2조 각호의 경우와 군수가 내용상 예술회관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술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예술회관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때
4. 기타 예술회관의 목적과 시설관리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6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영화 : 15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 7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4. 국악 및 음악회 : 3일 이내
5. 외국공연 또는 단체 및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6. 전시회 : 15일 이내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5일 이내

제8조(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할 때
5.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9조(사용시간) 예술회관의 공연장 등 사용시간은 08: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전시실사용시간은 10: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일	오 전	오 후	야 간
08:00 ~ 22:00	08:00 ~ 12:00	13:00 ~ 17:00	18:00 ~ 22:00

제10조(사용료 등) ①예술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허가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통보일 기준으로 10일이내인 경우에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제1항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9조의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1조(사용료 특례 및 감면) ①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영화상영에 따른 사용료는 당해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공연연습, 무대설치 및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④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제8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군수는 예술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예술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관람료 등) ①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관람권의 수표는 예술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처를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판매되지 아니한 관람권과 입장시 절취한 관람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폐기한다.
⑥예술회관의 자체공연 또는 기획공연도 위의 각 항의 규정을 따른다.
⑦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 및 단체에 대하여는 회관이용에 대해 30% 범위내에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단, 단체는 30인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경우에는 군수는 예술회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타 예술회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8조(홍보물 게첨) ①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예술회관에 게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제19조(강사의 초빙) ①군수는 여성 및 사회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여성 및 사회교육 수강료

구 분	내 용	기 준	수 강 료	비 고
자 격 증 반	조리기능사, 제과제빵, 미용사, 기타 자격증반	1인 1월	10,000원	재 료 비 별도부담
취미 · 교양반	전통놀이, 음악, 미술,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 · 교양분야	1인 1월	5,000원	〃

【별 표 2】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공 연 (영 화)	행 사	
공연장	1 일	250,000원	300,000원	※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해사용료의 20%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사용시 당해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 예술회관에서의 여성교육과 사회교육, 예술회관에 사무실을 둔 성주문화원의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소강당 사용은 사용료 면제
	오 전	80,000원	100,000원	
	오 후	100,000원	120,000원	
	야 간	120,000원	150,000원	
야 외 공연장 및 소강당	1 일	50,000원		
	오 전	20,000원		
	오 후	20,000원		
	야 간	30,000원		
	예식(결혼식)	20,000원		
전시실	1 일 (10:00~20:00)	30,000원		

【별 표 3】 부대설비 사용료

설비명			단위	사용료	비고
피아노			1회	30,000원	1. 1회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시간으로 계산 3. 기기사용 재료 및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4.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의 인력과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5. 사용료 면제 가. 행사만을 위한 무대조명 나.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다.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프로젝트 사용 라. 소강당에서의 여성교육 및 사회교육과 예술회관에 사무실을 둔 성주문화원의 교육 및 회의를 위한 부대시설 사용
무대조명			1회	50,000원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30,000원	
	녹음	릴	1회	20,000원	
		카셋트	1회	10,000원	
		CD	1회	20,000원	
		비디오	1회	20,000원	
	마이크 (3개 초과시)		1회/개당	5,000원	
무대시설	오케스트라비트		1회	20,000원	
	이동무대		1회	20,000원	
영사시설	영사기		1회	20,000원	
	LCD프로젝트		1회	20,000원	
냉난방시설	대강당		1회	50,000원	
	소강당		1회	20,000원	
	전시실		1일	20,000원	
특수장비 (무대효과)	드라이아이스기		1회	10,000원	
	스모그기		1회	10,000원	
기타시설	덧마루		1회	10,000원	
	고무매트 (테이프 포함)		1회	10,000원	
	보면대 (30개이상 사용시)		1회	10,000원	